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20

2021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

1. 제안이유

-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교류 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제2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시설규모: 765m²

○ 주요시설: 강의실, 강당, 휴게실, 상담실 등

○ 인력운영: 5명(센터장 1, 교육·문화사업 2, 상담사업 1, 회계·행정 1)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주말도 행사 등에 의해 필요시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2. 1. 1.~ 2024.12.31.)

○ 위탁사무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일체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지원(한국어/검정고시/학습 멘토링) 및 문화교 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등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업

-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소요예산 : 862,355천원('22년도)

- 인건비 241,508천원, 사업비 309,419천원, 운영비 311,428천원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1.5.17.)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상담·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및 제18조의2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4조·7조·18조 및 20조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7. 외국인주민의 기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기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기족관계 유지를 위한 시업
 - 8. 외국인주민 기족 내 기정폭력의 예방 및 기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면자 등의 보호 지원
 -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2015. 12. 1.〉(제목개정 2015. 12. 1.)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4358, 2021.4.16.)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이하 "온드림"이라 함)을 민 간위탁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¹)에 따라 민간 위탁²)(신규)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지원(한국어/검정고시/학습 멘토링) 및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등 안정적 정착에 필 요한 사업
 -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 · 정서적 안정 지원 등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u>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u> 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온드림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서울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해당사업을 연장하여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서울시가 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의 사무로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온드림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이 직접 수행한 사업이 아닌,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타 법인에 위탁을 주어 수행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임대료를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임.

○ **운영체계** : 서울시(공간제공) + 현대차정몽구재단(센터운영·사업수행 위탁, 재원조달)

※ 현대차정몽구재단 ↔ (사)이주민센터친구 간 : 별도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 위·수탁체결

○ **운영법인** : (사)이주민센터친구 ('21년) ※15~20년 (사)두드림글로벌재단

○ **운영예산** : **300백만원** (현대서정몽구재단 전약자원, '20년 800백만원) ※ 서울시 250백만원 별도 지원

○ **소 재 지** : **문래교육장(765** m^2)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주요사업 :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2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검토

가. 법적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3)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 면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4)제10조에서는 이중언어교육을 포함하

^{3)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여 언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4조5)는 시장으로 하여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적절한 시책추진의의무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제1항제6호6) 등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18조7)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동 조례 제7조제1항각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제목개정 2015. 12. 1.]
-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u> 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 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5. 외국인 ·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호의 사업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0조⁸⁾는 제18조에 의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9)는 시장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거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 다고 하고 있는 바, 시장이 온드림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 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나. 기존 사업 추진 사항 검토

ㅇ 온드림은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서울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

^{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⁸⁾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 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⁹⁾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던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방식이 타 사업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드림은 서울시의 사무가 아니라 현대차정몽 구재단의 목적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의 실무자 를 대상으로 FGI를 한 결과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와 온드림센터 간에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이 더 많은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담당자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된 면이 있습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방향 제안 p86

- 그리고 민관협력사업이라는 진일보한 사업수행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방만한 센터 운영 △수탁법인 대 표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센터장 간 불화 장기화 △현대차정몽구재 단의 센터 운영에 대한 미흡한 모니터링 (인사 및 회계 중심 모니터 링) △일관되지 못한 서울시의 개입 등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온드림의 평가 결과10) 적절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도출 되었는데, 온드림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를 체 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사례관 리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설계 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같은 연구에서 온드림은 민관협력의 모범적 시도 중 하나로 여

¹⁰⁾ IOM(2020)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방향 제안"서울특별시·현대차정 몽구재단.

겨져 왔으나, 평가 과정에서 공공부문·사기업·제3의 위탁운영법인 간책임성 분산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온드림의 운영에 있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방식, 특히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민관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부각돼왔지만 업무 당사자들은 민관 사이 인식의 괴리, 시간과 인력부족 등이 민관협력에 걸림돌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주체 간 역할과 권한, 책임, 책무성에 대해 명문화하는 한편, 주기적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제시한 바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온드림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는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올해 센터 인력은 8명으로 시작했다가 6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서울시나 여타 정부기관의 위탁운영 시설도 아닙니다. 급여수준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직원들이 경력 인정도 받지 못해 오기를 꺼려합니다." 센터실무자 B "직원들이 1년마다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인력을 못 키우는 상황입니다."

- 센터실무자 A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방향 제안 p86

○ 온드림은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고 사회복지실천 이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의 주체는 무관심으로,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집행부는 비전문가

- 의 일관적이지 못한 사업방향의 잦은 변경으로 온드림의 사업성과를 저해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온드림이 전문가에 의해 사업수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의 복잡성(민관협력사업)으로 인해 장기화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전문적인 실천을 하기에는 부적절 했던 것으로 나타남.

라. 소결

- 온드림은 담당자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된 면이 있다는 진술과 같이 집행부의 비전문적인 개입과 민관협력사업이라는 거버넌스의 특이성, 재정부담자인 "현대차정몽구재단"의 무관심 등 온드림이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이 낮게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시장이 동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 한 사업계획과 효과성 측정지표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동 사무의 민간위탁 이전에 관련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온 드림의 사무는 한국어지원, 진로교육, 교육지원, 취업관련 정보연계, 한국사회이해 교육, 지역사회연계 및 홍보 등인데 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할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연구용역에서 이용자의 취업욕구가 있음이 드러났고, 연구결

과에서도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는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 응 지원과 같은 불충분한 정착방안을 위탁사무로 제시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시장이 온드림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시장의 사무로 규정된 것을 민간의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적 문 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민관협력사업으로 운영해 온 온드림의 경우 부적절한 지도 및 감독으로 인해 전문성이 훼손되고 전문가의 사업 수행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재정부담자와 집 행부 그리고 수행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이루지 못했음이 드러남.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수행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시장이 민간위탁 동 의안을 통해 제시한 위탁사무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사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의 처리에 앞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참고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420

제출년월일: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칭)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교류 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할 계획이며,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시설규모 : 765 m²

○ 주요시설 : 강의실, 강당, 휴게실, 상담실 등

○ 인력운영 : 5명(센터장 1, 교육·문화사업 2, 상담사업 1, 회계·행정 1)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주말도 행사 등에 의해 필요시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2. 1. 1.~ 2024.12.31.)

○ 위탁사무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일체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지원(한국어/검정고시/학습 멘토링) 및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등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업

-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소요예산 : 862,355천원('22년도)
 - 인건비 241,508천원, 사업비 309,419천원, 운영비 311,428천원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1.5.17.)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상담·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및 제 18조의 2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기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 7조 · 18조 및 20조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7. 외국인주민의 기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기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기족관계 유지를 위한 시업
- 8. 외국인주민 기족 내 기정폭력의 예방 및 기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면자 등의 보호 지원
-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다문화가족지원법 10조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제목개정 2015. 12. 1.〕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계획

(외국인다문화담당관-4358, 2021.4.16.)

※ 작성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정책팀 강상원 (☎ 2133-5065)